

2024. 3. 18.(월)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3월 18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금융투자과 투자유치팀

금융투자과장

김 윤 하

2133-8547

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 11매

투자유치팀장

김 윤 정

2133-4760

서울시, 신규 인력 6명 이상 채용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최대 2억 원 지원

- 시, 금융·디지털콘텐츠 등 신산업분야 외투기업이 신규직원 채용 시 최대 2억 지원
- 외국인 투자비율 30%↑ + 투자 후 5년 내 신규 고용해야...스타트업, 신규 신청 기업 우대
- 4.19(금)까지 신청...외투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로, 서울 경제 활성화 기대

□ 서울시가 8대 신성장동력 분야로 지정한 금융, 디지털콘텐츠 등 분야에서 서울시 외국인 투자기업이 6명 이상의 신규 인력을 채용하면, 기업당 최대 2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 서울시 8대 신성장동력산업은 ▲IT융합 ▲디지털콘텐츠 ▲녹색산업 ▲비즈니스 서비스 ▲패션·디자인 ▲금융업 ▲관광컨벤션 ▲바이오 메디컬이다. 단, 서울시와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외국인 투자기업은 신성장동력산업 여부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 서울시는 서울에 진출한 디지털콘텐츠, 바이오의료 산업 등의 외국인 투자기업이 국내에서 많은 인재를 고용하고 교육을 통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외국인 투자기업 고용·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

- 고용·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일 현재 외국인 투자 비율 30% 이상을 유지하면서, 최초 또는 증액 투자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규 고용 및 교육훈련이 이뤄진 기업이어야 한다. 심의 시 설립 7년 이내 스타트업, 신규 신청기업을 우대한다.
 - 다만, 보조금 수령 기업은 2023년 상시고용인원 및 외국인 투자비율 30% 이상을 2026년까지 유지하여야 하여야 한다.

- 선정된 외국인 투자기업에는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 보조금을 합산하여 1인당 최대 10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보조금이 지원되며, 2024년에는 총 4억 4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은 4월 19일(금)까지 보탬e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유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탬e 사이트, 서울시 공고란, 인베스트서울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신청서식은 보탬e사이트(<https://www.losims.go.kr>) 및 서울시 공고 (https://www.seoul.go.kr/news/news_notice.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김윤하 서울시 금융투자과장은 “서울시 신성장동력산업의 외국인 투자 기업이 국내에서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신규채용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 인센티브를 개발해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서울의 일자리 창출에 동참하고, 서울의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게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1. 2024년 외국인투자기업 고용·교육훈련 보조금 지원계획 공고문

2. 서울시 지정 신성장동력 8대 산업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821호

2024년 외국인투자기업 고용·교육훈련 보조금 지원계획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20조제4항 및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지원 조례 제15조 및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2024년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업은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18일

서울특별시

실적 산정 기간 : 2023. 1. 1. ~ 12. 31. (신청 전년도 실적 기준)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 대상기업 : 서울시 외국인투자유치사업 진행 기업(투자유치 관련 MOU 체결기업) 또는 서울시 신성장동력산업* 분야 외국인투자기업

※ 8대 신성장동력산업 : IT융합, 디지털콘텐츠산업, 녹색산업, 비즈니스 서비스업, 패션·디자인, 금융업, 관광컨벤션업, 바이오메디컬(붙임1 참고)

○ 지원조건(모두 충족 필요)

- 최초 외국인 투자 후 또는 증액 투자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규 채용(교육훈련)을 실시한 기업(외국인직접투자 기준)
- 신청일 현재 외국인투자비율이 30% 이상인 기업

※ 대한민국 국민·법인이 외국기업의 주식(지분)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해당 비율은 제외

- 아래 고용 조건을 충족한 기업

▶ 고용보조금 : 신성장동력산업으로 '23년 상시 고용인원 증가분이 '22년 대비 **5명을 초과**한 기업
(단, 서울시와 MOU 체결 기업은 '23년 고용인원이 '22년 대비 **증가**한 기업)

▶ 교육훈련보조금 : '23년 신규 고용하여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 훈련을 실시한 기업

※ 단, 2023년 신설기업의 경우 2023년 4분기(10월~12월) 신규 고용에 따른 평균 상시 고용인원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해당 인원이 5명을 초과한 기업
(서울시와 MOU 체결 기업은 해당 기간의 고용이 발생한 기업)

〈 상시고용인원 〉

◆ 근거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243호, 2023. 12. 27. 일부개정)

◆ 정의 : 독립된 사업장에서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의 1년 평균인원

◆ 산정방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납부자료를 통해 증명 가능한 인원을 월할 계산하여 평균값으로 계산함(붙임3,4 서식 참고)

○ 심의 우대 조건

- 설립 7년 이내의 스타트업

- 신규 신청 기업('19~'23년 기준 2회 이상 지급 기업 후순위 지원)

- 서울시가 유치한 외국인투자기업(투자유치 관련 MOU 체결)

※ 위 기준에 근거하여 외국인투자 지원 심의회의 의결 후 지원 기업 및 금액 결정

□ 지원 금액

○ 1개社당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합산 최대 200백만원

○ 2023년도 신규고용 5인 초과인원 1인당 월 1백만원 내, 최대 6개월분 지급

(서울시와 MOU 체결 기업은 신규고용 인원 전원에게 지급)

□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4. 3. 18. ~ 4. 19.
- 접수방법 : 보탭e 사이트(<https://www.losims.go.kr>)를 통한 접수
- 문 의 처 : 서울특별시 경제정책실 금융투자과
 - 전화번호 : 02-2133-4763 (보조금 지원 담당자)
 - 전자우편 : tkdud100@seoul.go.kr
- 제출서류
 - 보조금 지원신청서(붙임2) 1부
 - 상시 고용현황보고서(붙임3)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 외국인투자신고서 및 송금전문, 외국환매입증명서 사본 1부
 - 고용보험 보험가입 증명원 1부(신청일 현재 기준)
 - 사업장고용정보현황(고용현황, 퇴사자 2종류로 제출) 1부
 - 소득세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붙임3에 해당하는 근무기간) 사본 1부
 -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및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각 1부
(신청일 현재 www.4insure.or.kr에서 출력)
 - 근로자명단('22.1월 ~ 12월분, '23.1월 ~ 12월분) 사본1부(붙임4_별도파일)
 - ※ 입사일, 성별, 성명, 내·외국인 표시 요망
 - 외국인투자기업의 재무제표 1부
 - 회사소개서(최근 5년 이내 외국인투자실적 및 향후 투자계획(2026년까지) 포함)
 - 교육훈련보조금의 경우 교육훈련 실시내용 및 지출 증빙자료 1부
 - 건물사용권 증명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1부
 - 서울시 투자유치 관련 MOU 사본(해당 기업만 제출) 1부.

□ 이행사항

- 보조금의 수령 및 지출에 필요한 계좌는 별도로 관리하여야 하며, 인건비(급여,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함
- 보조금 수령 기업은 보조금 신청년도를 포함하여 3년 동안(24~26년)은 보조금 신청 전년도(2023년)의 상시고용인원 및 외투 비율 3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함
- 보조금 통장 이자를 포함하여 보조금 집행 중 보조금으로 인해 생긴 수입은 반납을 원칙으로 함
 - ※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취소에 따른 보조금은 환수함
 - 상기 지급조건 위반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지원받은 경우
 - 사업장을 다른 시·도로 이전하는 경우

□ 기타사항

- 제출서류는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검증할 예정이며, 필요 시 추가 서류요청이 있을 수 있음
- 자세한 문의 사항은 금융투자과 담당자(☎ 02-2133-4763, tkdud100@seoul.go.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업종코드 및 업종명
1. IT융합	261 반도체 제조업
	262 전자부품 제조업
	263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
	264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
	265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
	2918 사무용 기계 및 장비제조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2021 컴퓨터시스템통합자문 및 구축서비스
	62022 컴퓨터시설 관리업
	62090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관련서비스업
	63111 자료 처리업
	6312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63999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2. 디지털콘텐츠산업	33402 영상 게임기 제조업
	58211 온라인, 모바일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9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11 일반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2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3 광고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4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관련 서비스업
	5913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배급업
	5920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구분	업종코드 및 업종명
	60221 프로그램 공급업
	60222 유선방송업
	60229 위성 및 기타 방송업
	63910 뉴스제공업
	73901 매니저업
	75121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90110 공연시설 운영업
	90121 연극단체
	90122 무용 및 음악단체
	90123 기타공연단체
	90191 공연기획업
	90192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90199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3. 녹색산업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28123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
	28201 일차전지 제조업
	28202 축전지 제조업
	28410 전구 및 램프 제조업
	28423 전시 및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업
	29174 기체 여과기 제조업
	29175 액체 여과기 제조업
	35114 태양력 발전업
	35119 기타 발전업
	38110 지정외 폐기물 수집 운반업
	38120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38130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

구분	업종코드 및 업종명
	38210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
	38220 지정 폐기물 처리업
	38230 건설 폐기물 처리업
	3831 금속류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3832 비금속류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3900 환경 정화 및 복원업
	41224 환경설비 건설업
	42110 건물 및 구축물 해체 공사업
	46791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72122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4. 비즈니스서비스업	70 연구개발업
	711 법무관련 서비스업
	712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713 광고업
	71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153 경영컨설팅 및 공공 관계 서비스업
	72111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72112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72121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9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3909 그 외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857 교육지원 서비스업
5. 패션·디자인	73201 인테리어디자인업
	73202 제품디자인업
	73203 시각디자인업
	73209 패션, 섬유류 및 기타 전문 디자인업

구분	업종코드 및 업종명
6. 금융업	64121 국내은행
	64122 외국은행
	64131 신용조합
	64132 상호저축은행 및 기타 저축기관
	64201 신탁업 및 집합 투자업
	64209 기타 금융 투자업
	64911 금융리스업
	64912 개발 금융기관
	64913 신용카드 및 할부 금융업
	64991 기금 운영업
	64992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 비금융 지주회사)
	64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융업
	65110 생명보험업
	65121 손해보험업
	65122 보증보험업
	65131 건강보험업
	65139 산업 재해 및 기타 사회보장 보험업
	65200 재보험업
	66121 증권중개업
	66122 선물중개업
	66191 증권 발행, 관리, 보관 및 거래 지원 서비스업
	66192 투자 자문업 및 투자 일임업
	66201 손해사정업
	66202 보험대리 및 중개업
	66209 기타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76400 무형 재산권 임대업

구분	업종코드 및 업종명
7. 관광컨벤션	55101 호텔업
	55103 휴양콘도 운영업
	55104 민박업
	55109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73902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 서비스업
	75992 전시, 컨벤션 및 행사대행업
	91210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91239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8. 바이오메디컬	21101 의약품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21220 한의약품 제조업
	21230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27111 방사선 장치제조업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27191 치과용 기기 제조업
	27192 정형외과용 및 신체 보정용 기기 제조업
	27199 그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86101 종합병원
	86102 일반병원